

지방발전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

- I. 지방발전영향평가의 도입배경
- II. 지방발전영향평가의 개념과 의의
- III. 국내·외 관련제도 검토
- IV. 법령의 지방발전영향 실태조사
- V. 지방발전영향평가 도입방안

지방발전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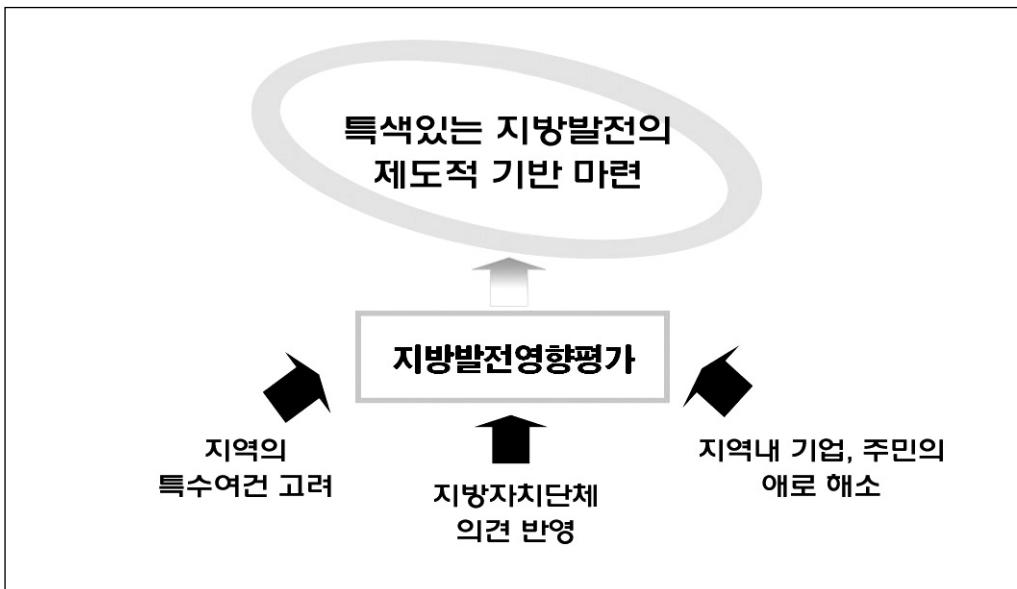
I 지방발전영향평가의 도입배경

- 상당수 법률의 제·개정이 소관 부처의 업무와 관련한 국가적 목적의 달성에 치우친 나머지 특정 지역주민의 복리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
- 법령과 제도가 개발여건, 환경, 발전수준 등 지역의 국지적 특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제정되어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해당 지방자원에 서는 원하지 않는 결과 초래
 - 주로 농지 및 초지이용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나 수질 또는 대기 등에 대한 환경규제 등에서 많이 나타남
 - 특히 수도권을 겨냥하여 입안되었던 규제와 그 관련 법령 등이 지방의 발전을 발목잡는 결과를 낳기도 함
- 법제처는 입법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등 법리적 특성을 심사하고 있으나 지역의 차별적 영향은 소홀히 취급
- 자치단체에서는 각종 법령의 입법예고시 의견제출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각종 자치단체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소관부서가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별도의 의견개진 수단이 없음
- 따라서 법률의 제·개정시 혹은 제도도입시 지방의 차별적 특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채널 및 시스템으로서 “지방발전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II. 지방발전영향평가의 개념과 의의

- '지방발전영향평가'란 정부가 제정 또는 입안하는 법령이나 제도가 지방의 발전 및 주민의 복리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예측·파악하는 제도를 의미함
 - 투입요소로서 법령의 제·개정이나 제도의 도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모두 포함
 - 투입요소는 법령, 제도, 조세, 재정투자, 규제 등 다양한 요소가 해당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법령에 제·개정에 초점을 둠
- 지방발전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은 국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령과 제도의 수립이 지방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법령안 심사·평가에 있어서 각기 분화된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한다는 것임
 - 현재, 법제처는 입법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등 일반적인 법령안 심사를 하고 있음
 - 그러나, 입법의 합목적성 등 형식논리적인 문제만을 다룰 뿐, 다양한 상황에서 해당 법령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평가기준이 부재한 실정임
- 체계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입법 및 제도논의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견수렴의 통로가 미흡하기 때문에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 반영을 제도화한다는 의미임
 - 지자단체는 입법예고시 의견제출에 소극적이고 법령 및 제도 도입 이후, 사후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의견제출이나 변경신청을 할 경우 다수의 중앙부처와 협의조정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또한, 지방에서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중앙부처가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다른 의견개진 수단이 없어 관련 절차 등의 제도화가 요구됨

〈그림 1〉 지방발전영향평가의 의의



III. 국내·외 관련제도 검토

■ 국내 유사제도의 검토

- 현재 국내에는 유사제도로서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균형발전영향평가, 환경영향 평가 등의 각종 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규제영향평가는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에 근거하여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시
 - 대상 :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강화·기간 연장하고자 할 때
 - 기준 : 8개 항목·20개 평가요소, 중요규제 및 비중요 규제로 구분
 - 절차 : 해당 중앙행정부처의 자체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외부심사로 이원화

- 부패영향평가는 부패방지법(제2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각종 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 대상 :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 기준 : 3개 항목 · 9개 평가요소, 중점평가법령과 비중점평가법령으로 이원화
- 균형발전영향평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정사업이 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지원,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
 - 대상 : 원칙적으로 모든 재정사업 대상
 - 기준 : 균형지표 및 연차별 목표의 적정성, 목표 실행계획 및 달성을, 균형 발전 기여도 등 3개 항목
 - 운영 : 평가대상의 특성에 따라 3가지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균형발전 기여도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조정 권고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상 : 민간·공공의 개발사업(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 건설, 공항 건설, 관광단지의 개발 등)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2)에 근거하여 대규모개발사업(총사업비 400억원 이상의 국고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책적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

■ 외국 관련제도 검토

- 선진국의 경우 법령 제·개정시 이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안의 법률적 타당성, 적정성, 적사성, 다른 법률과의 양립성 등의 검토가 목적임
- 법령 사전심사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에 대하여 특정하게 "평가"로 지칭하고 있지 않으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법적인 사전검토를 거쳐 향후 나타날 영향에 대한 분석 절차를 거친다는 의미에서 '법령사전검토(심사)' 또는 '사전법안평가' (Evaluation of Legislation)로 볼 수 있음
- 영국
 - 의견수렴 기관으로 입법위원회(Law Commission)가 설치되어 있고, 법률의 법전화 (Codification), 현대화, 개정, 단순화 등의 작업을 주로 시행하고 있음
 - 법령 제정 이전에 참여하기 보다는 법령공포 이후 기존법률을 간결하게 하기 위한 법전화 작업에 중점적으로 관여
- 프랑스
 - 프랑스 국회는 1995년부터 국회입법개선처(Office parlementaire d'amélioration de la législation)를 만들어 법령 제·개정시 사전심사 및 영향분석 등을 시행
 - 입법안의 적절성에 관한 평가, 입법안의 간결함과 통합성 유도, 법률 집행에 필요한 시행령안 제정에 대한 감독 등을 수행하며 동시에 시민참여 공공조사를 통해 정책시행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

〈표 1〉 영국과 프랑스의 시민참여 공공조사(Public Inquiry) 제도

영향평가는 아니지만 특정 정책 수행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위해성여부, 정책시행 후 긍정적 영향예측 등을 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가 중심이 된 공공조사(Public Inquiry)를 시행하여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한 후 정책을 시행하는 제도

● 독일

- 1984년 1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연방부처에 대하여 법안 마련시 모든 법규법 규정과 법의 통합성 등을 충실히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지침을 고지
- 연방정부 내 각 주무부처가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전심사제도를 거쳐야 하는데, 주로 입법내용과 취지 등을 세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질문서에 의한 입법필요조사를 사전에 실시하고 있음
- 입법질문서를 통해 입법질서의 정당성, 문제점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입법사항이 되는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심의하고 있음

■ 시사점

- 외국의 제도를 보면 지역별 입법영향평가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법안의 적절성, 기존 입법안과의 통합성 및 충돌성 등 법리적 검토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의 시민참여 공공조사제도의 경우, 입법영향평가를 대신하여 이 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통로를 보장하고 있음
- 입법영향평가와 유사한 목적의 국내 유사제도들은 대부분 특정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지역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규제영향평가는 입법영향평가로서, 규제의 일반적인 영향 및 효과 분석, 부패요인제거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균형발전영향평가는 입법영향평가는 아니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적하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음
- 기존의 영향평가제도는 제도가 의도하는 소기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규제영향평가는 총량적인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규제가 개별 지방의 발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간과하고 있는바, 예컨대 규제비용이 목표지역 뿐 아니라 특정지역에 전가되어 특정 지역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균형발전영향평가는 재정사업의 추진여부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평가하는 제도이지만 국가재정사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한계가 있음

IV. 법령의 지방발전영향 실태조사

■ 지방발전영향 실태

- 법령의 지방발전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총 199명)는 다음과 같음
-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한 법령·제도 분야
 - 농지법(13.15%),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0.7%), 산지관리법(8.87%), 건축법(6.73%) 순으로 나타남
 - 주로 법령이 부과하는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불이익에 민원이 집중
- 지역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령·제도 분야
 - 시·군 지역의 경우, 산업입지·공장설립 관련 법령 및 제도와 농지이용 관련 법령 등이 지역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 자치구의 경우, 대부분(67%)이 도시계획이 가장 중요한 1순위 법령·제도 분야로 응답하였으며 2순위 분야는 산업입지·공장설립을 지적
- 개선이 시급한 법령·제도 분야
 - 전체 자치단체의 34%가 개선이 시급한 법령·제도 분야로 도시계획 분야를 꼽고 있음
 - 개선이 시급한 법령·제도 분야의 2순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 지자체 가운데 24%가 환경 분야를 꼽고 있음
- 이의신청 및 제도변경에 대한 자치단체 노력
 - 최근 3년간 이의·변경 신청의 경험이 있는 자치단체는 전체의 29%에 불과한 실정
 - 이의·변경 신청 결과, 총 신청 119건 중 47건(40%)이 거부되었으며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33건(28%)에 이르고 보류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수용된 경우는 단지 24건(20%)에 그침
 -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제도개선에 부정적,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의의·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단하기 때문으로 응답

● 지방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기대역할

- 광역자치단체는 100%가 규제에 따른 재정지원을 1순위 지원 희망 분야로 응답하였고, 기초자치단체도 약 78%~80% 정도가 규제를 보전하는 재정지원을 우선순위로 꼽고 있음
- 반면 규제 또는 제도 자체의 개혁에 대해서는 2순위 분야로 지자체의 30%~40%만이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어 대체로 정부의 법령 제·개정이나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경향이 큼

■ 제도도입의 시사점 및 제약

- 중앙정부의 역할 측면에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개혁이 지방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행되어야 할 중요한 분야로 지적
- 지방발전에 있어서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법령은 농지법, 산업입지·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등 주로 토지이용과 관련 법령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그러나, 토지이용 관련 법령 등은 주로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 등 여러 중앙부처에 걸쳐 있어, 협의과정이 다기화되어 있고 변경과정이 복잡하여 많은 기간이 소요됨
- 소관 부처에서 이의·변경 신청을 기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별다른 방도를 취할 수 없어 자치단체는 중앙부처에 이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
- 대부분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은 입지 여건이 열악하여 지역발전이 부진한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2중, 3중의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요망됨
- 따라서 지역 특성에 기초한 애로사항을 제도적,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중앙부처의 법령 제·개정에 반영시키는 대변자 매커니즘이 필요

- 지방발전영향평가의 도입시에는 당초 법령 및 제도가 의도하는 국가적 목표와 지방적 이익이 대립할 경우, 이들을 어떻게 양립, 조화시킬 것인지를 관건임
 - 예컨대 국가의 이익차원에서 보존되어야 할 환경자원과 환경보존으로 개발을 제약받는 지역의 개발이익간 조정이 문제로 제기
- 규제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지방의 국지적 이익을 배려하다보면 법령 및 제도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V. 지방발전영향평가 도입방안

■ 지방발전영향평가의 체계

① 평가목적

- 전국을 대상으로 획일적 법률의 제·개정이나 제도의 설치로 인한 지방의 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법률의 제·개정이나 제도 설치시 반영
- 법령의 지방발전영향을 평가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② 평가대상

-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에 포괄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제도를 대상으로 함
- 평가대상인 법령은 중점 평가대상과 비중점 평가대상으로 이원화
 - 중점평가대상: 도시계획, 산업입지, 토지이용, 주택 및 건축, 환경, 복지에 미치는 법률
 - 비중점평가대상: 중점 평가대상을 제외한 법률

③ 평가기준

- 평가기준은 평가대상여부·판단기준과 지역별 차등영향평가 기준으로 이원화함
- 즉 1차로 평가대상여부·판단기준에 따라 지방발전영향평가 대상법령을 선정하고 2차로 지역별 차등영향평가기준에 따라 지방발전영향을 평가

④ 평가주체

-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중앙부처가 평가대상여부를 판단하는 1차 평가 주체가 됨
- 지방발전영향평가의 대상법령에 대한 2차 평가는 객관적이고 독립적 기구로서 「지방발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
- 행정자치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 차관 및 시·도지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
- 각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와 자치단체와의 의사소통 등 창구 역할을 담당
-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법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발전영향평가자문단」을 운영

⑤ 평가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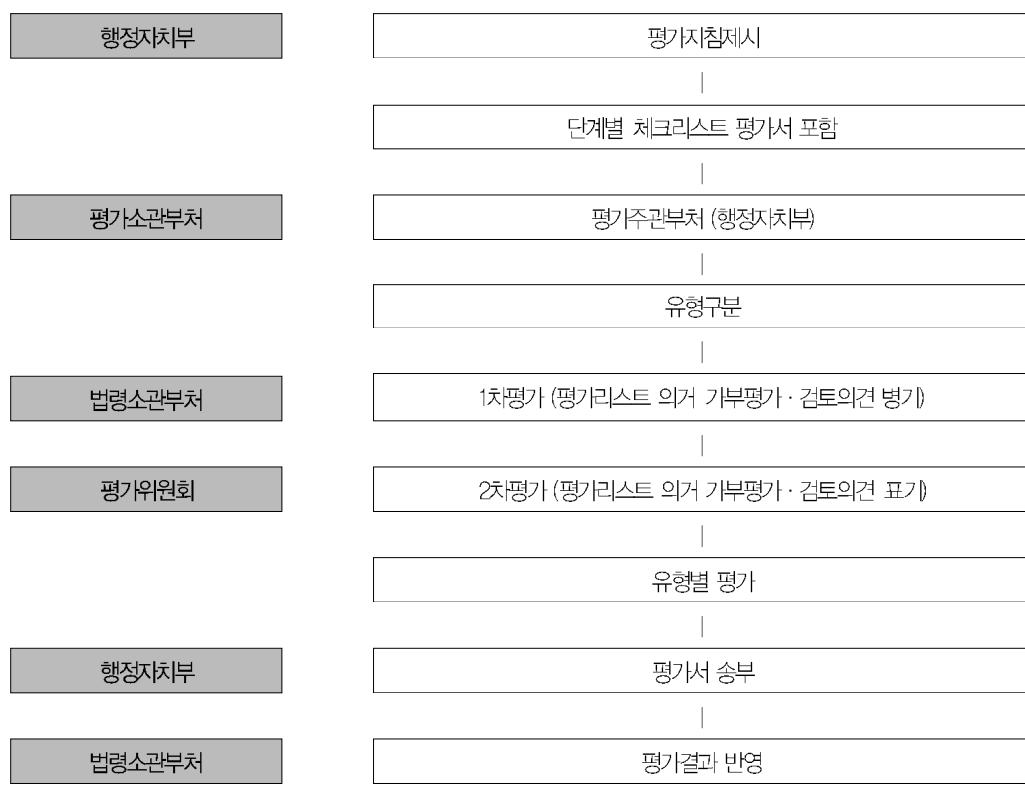
- 법제처 법령심사 이전에 지방발전영향평가를 실시하며 비중점 분야의 경우는 자치단체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평가
- 법령이 입안될 경우, 법령의 지방발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중앙부처(행정자치부)에 통보
- 행정자치부는 해당 법령을 소관부처로 이관, 자체평가 의뢰
- 소관 중앙부처는 해당 법률의 유형을 판단함과 동시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지방발전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판단

- 평가대상 법률에 대해서는 지방발전영향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 제안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해당기관은 시정조치 내용을 행정자치부에 회신

〈표 2〉 지방발전영향평가기준 및 체크리스

| 평 가 측 면 | | 평 가 기 준 | 평 가 사 항 |
|-------------------|---------|--|---|
| 평가대상 여부 | | – 법령내용 기준 | – 지역발전의 영향성 |
| | | – 법령성격 기준 | – 외교, 국방 등 국가포괄적 적용사안 제외 |
| 지역별 차등영향 평가 | 도시계획 | – 지역간 도시계획 적용의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지역경쟁 타지역 적용성 – 도시기능 개선의 지역별 영향 – 지역간 입지(규제)의 영향 – 지역간 발전의 저해 가능성 – 균형발전의 지역간 기여도 등 |
| | 산업입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산업입지 영향 – 지역의 특수여건 감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인구집중 영향 차별성 – 지역간 경제력 집중영향 차별성 – 지역의 특수한 산업여건 감안정도 – 지역간 산업입지(규제)의 차별성 – 지역간 산업의 균형발전 차별성 등 |
| | 토지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률적 토지이용규제 영향 – 특정여건 감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지목별 토지이용규제 영향 – 지역간 용도지역(지역, 지구 등)의 차별성 – 지역간 고도제한의 차별성 – 지역균형발전 차별화 영향 정도 등 |
| | 주택 · 건축 | – 건축규제의 일률성 으로 인한 타지역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용적률 규제의 차별성 – 지역간 건폐율 규제의 차별성 – 지역간 건축규제의 차별성 등 |
| | 환경 | – 환경규제의 일률성으로 인한 타지역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수질규제의 차별성 – 지역간 대기규제의 차별성 – 특정지역 환경규제로 인한 타지역 영향 등 |
| | 복지 | – 일률적 법령으로 인한 지방의 복지에 대한 차등적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의료의 차별성 – 문화향수의 차별성 – 기타 복지 차별적 영향 등 |

〈그림 2〉 지방발전영향평가 추진절차



■ 지방발전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제언

- 지방발전영향평가는 부처별 고유업무의 이해관계에 초연하고 자치단체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비사업부처(행정자치부) 또는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앙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법령은 소관부처의 업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 특수한 여건을 법령의 제·개정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방발전영향평가는 궁극적으로 세제, 재정, 규제 등의 지역간 차등지원과 연계하여 포괄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균형발전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일차적으로는 지방에 불합리한 법령의 제정으로부터 지방의 특수한 불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작하되 점차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의 발전수준의 차이를 감안한 정부정책의 차등지원이란 맥락에서 포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가능
- 지방발전영향평가제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지만 조속한 법제화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제화 이전단계에서 시범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후 후속단계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법제화 이전 단계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지방발전의 제약 등에 대한 애로 및 고충의 대변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옴부즈만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여론조성 및 인식확산에 주력
 - 어느 정도 인식이 제고되고 실효성이 가시화되면 법제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구속력을 확보
- 지방발전영향평가의 법제화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설치하는 방안, 지방분권영향평가와 통합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을 설치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되 기존 정부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과정을 거쳐 공론화, 입법화를 추진

내용문의 : 김선기 선임연구위원(sun@krila.re.kr, 02-3488-7342)
김현호 수석연구원(hhkim@krila.re.kr, 02-3488-7344)

메 모

메모

「자료 회원」안내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항구적인 정착,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법률 제3809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당 연구원은 설립이래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각종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기관 및 인사에게 보급하여 왔습니다. 당 연구원은 유익한 자료를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자료회원제를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자료회원 가입방법

당 연구원 소정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우송하거나 팩스(02-3488-7370)로 전송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 홈페이지(자료회원 가입안내)에서 양식을 Down 받아 작성하시고 메일(leepyong@krila.re.kr)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직접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연중 수시로 하실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은 회비를 입금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기존 회원은 회비 만 납부)

2. 회원구분, 회비, 자료구독내용, 회비납부방법

| 회원구분 | | 회비 | 자료구독내용 | 회비납부방법 |
|------|------|----------|---|--|
| 일반회원 | 개인회원 | 30,000원 | 지방행정연구, KRILA FOCUS, 세미나·공청회 초청장 등 | ○ 지로납부: 지로용지발송(지로번호 7630619) |
| | 기관회원 | 50,000원 | | |
| 특별회원 | 개인회원 | 100,000원 | 지방행정연구, 연구보고서, 연구자료집, KRILA FOCUS, 세미나·공청회 초청장 등 | ○ 은행송금: 국민은행 367-01-0044-581 (예금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 기관회원 | 150,000원 | | |

3. 제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혁신기획실 조성사업팀

(137-87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2-13

T. 02-3488-7363 / F. 02-3488-7370 / E. leeyong@krila.re.kr



<http://www.krila.re.kr>

「지방행정연구」원고 모집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관련 전문학술지인 「지방행정연구」에 게재 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지방행정연구」는 1986년 7월에 제1호 발간을 시작하여 그 동안 자치행정, 지방재정 · 세제, 지역정책분야의 주제에 대한 수준 있는 연구논문들을 게재하여 지방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관련 분야의 활발한 지식교류를 위한 매체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04년 후반기에는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투고하신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논문심사판정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합니다.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1. 연구지 모집분야 : 자치행정, 지방재정 · 세제, 지역정책 · 균형발전

2. 연구지 발간일정 : 연 4회 발간

— 2007년 3월호(통권 제68호), 2007년 6월호(통권 제69호)

— 2007년 9월호(통권 제70호), 2007년 12월호(통권 제71호)

3. 논문접수일정 : 연중 수시접수

4. 논문제출 방식 : E-mail로 제출 (local@krila.re.kr)

5. 논문작성 방식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www.krila.re.kr)의

「지방행정연구지 기고안내」 참조

6. 제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혁신기획실

(137-87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2-13

T. 02-3488-7356 / F. 02-3488-7305 / E. local@krila.re.kr



<http://www.krila.re.kr>

